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  
단  
인  
법  
인

# 대한병원협회



수신병원장

참조

제목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2591(2024.4.22.)

나.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2024-123호(2024.4.18.)

2.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구분	종전 조치('24.3.20.)	변경 조치('24.4.22.)
법적근거	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제3호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	
적용대상	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	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 (별도 절차 없이 일괄 허용)
	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	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(심평원 인력신고*만으로 가능)  *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'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'을 통해 '기타'인력으로 신고
	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종전조치 유지
시행시기	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'심각'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('24.3.20.~)	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'심각'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('24.4.22.~)

※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T.1644-2000). 끝.

## 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전세영 팀장 강대경 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4-132호(2024.4.24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/ www.kha.or.kr

TEL. 02)705-9235 FAX. 02)705-9229 E-mail: syjeon@kha.or.kr